

울산광역시북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 | |
|--------|---------|
| 공 람 | 기 관 의 장 |
| | |



제 792 호 2012. 12. 28(금)

규 칙

○ 울산광역시 북구 규칙 제399호[울산광역시 북구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2

| | | | | | | | | |
|--------|--|--|--|--|--|--|--|--|
| 회 람 | | | | | | | | |
|--------|--|--|--|--|--|--|--|--|

발행: 울산광역시북구 편집: 기획홍보실(☎241-7124 행정7124)

울산광역시 북구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윤종호

2012년 12월 28일

울산광역시 북구 규칙 제399호

울산광역시 북구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울산광역시 북구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배송자 선정 시에 협약체결 기간은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배송자 선정 협약체결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협약체결을 받은 배송자는 이 규칙에 따라 협약체결을 한 것으로 본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 학교에 식자재를 공급하는 배송자에게 안정적인 사업기간을 제공해 급식에 대한 사명감을 부여하고 효율적인 배송기능을 강화
- 식자재 수요자와 공급자 간 학교급식사업에 대한 공공성에 공감대를 형성

2. 주요내용

가. 친환경무상급식 지원 배송자의 선정기간에 대한 기준 변경(제15제3항)

- (기존) 배송자의 선정과 협약체결 1년
- (개정) 배송자의 선정과 협약체결 2년, 한 차례 연장